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4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김혜련,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양민규,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인구 의원(26명)

1. 제안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종류로 ‘국적’은 일정한 사람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이나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조항에 ‘국적’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을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 아동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2. ~ 5. (현행과 같음)